

각 영주권 신청인마다 상황이 달라 여러 유형별로 이번 정책이 가져올 결과,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아직 불확실한 것이 많아 틀린 내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 무비자 (ESTA) 로 입국하신 분들.

이분들은 시민권자와 결혼 또는 21 세 이상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상황	어떻게 되나?
이미 영주권 수속이 시작된 경우	1A	무비자로 입국한 다음 합법적 체류 상태에서 영주권 수속이 시작된 분	영주권이 거부되고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수속하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가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염려됨.
	1B	무비자로 입국한 다음 합법적 체류가 끝난 다음 영주권 수속이 시작된 분	영주권이 거부되고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수속하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10 년동안 미국에 못 올 가능성이 큼.
아직 영주권 수속이 시작 안된 경우	1C	미국에 온지 아직 90 일 미만으로 아직 합법적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이민국 통해 영주권 신청하면 거부되고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수속하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큼.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가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염려됨.

	1D	미국에 온지 90 일 넘었지만 불체되지 아직 6 개월 (180 일) 미만인 경우	이민국 통해 영주권 신청하면 거부되고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수속하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큼.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가 매우,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염려됨.
	1E	미국에 온지 90 일 넘었고 불체되지 6 개월 (180 일) 넘긴 경우	이민국 통해 영주권 신청하면 거부되고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수속하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큼.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10 년동안 미국에 못 올 가능성이 큼.

2. 방문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

	구분	상황	어떻게 되나?
이미 영주권 수속이 시작된 경우	2A	방문비자로 입국한 다음 합법적 체류 상태에서 영주권 수속이 시작된 분	영주권이 거부되고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수속하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가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염려됨.
	2B	방문비자로 입국한 다음 합법적 체류가 끝난 다음 영주권 수속이 시작된 분	영주권이 거부되고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수속하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10 년동안 미국에 못 올 가능성이 큼.

아직 영주권 수속이 시작 안된 경우	2C	아직 합법적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이민국 통해 영주권 신청하면 거부되고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수속하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큼.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가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염려됨.
	2D	합법적 체류기간 넘겼지만 불체되지 아직 6개월 (180일) 미만인 경우	이민국 통해 영주권 신청하면 거부되고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수속하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큼.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가 매우,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염려됨.
	2E	합법적 체류기간 넘겼고 불체되지 6개월 (180일) 넘긴 경우	이민국 통해 영주권 신청하면 거부되고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수속하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큼.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10년동안 미국에 못 올 가능성이 큼.

3. 학생 (F1) 또는 E2 비자나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계셨던 분들.

	구분	상황	어떻게 되나?
이미 영주권 수속이 시작된 경우	3A	합법적 체류 상태에서 영주권 수속이 시작된 분	영주권이 거부되고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수속하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가 까다로울 것으로 염려됨.

<p>이미 영주권 수속이 시작된 경우</p>	<p>3B</p>	<p>합법적 체류가 끝난 다음 영주권 수속이 시작된 분</p>	<p>영주권이 거부되고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수속하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10 년동안 미국에 못 올 가능성이 큼.</p>
<p>아직 영주권 수속이 시작 안된 경우</p>	<p>3C</p>	<p>합법적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p>	<p>이민국 통해 영주권 신청하면 거부되고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수속하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큼.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가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염려됨.</p>
	<p>3D</p>	<p>합법적 체류기간 넘겼지만 불체되지 아직 6 개월 (180 일) 미만인 경우</p>	<p>이민국 통해 영주권 신청하면 거부되고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수속하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큼.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가 매우,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염려됨.</p>
	<p>3E</p>	<p>합법적 체류기간 넘겼고 불체되지 6 개월 (180 일) 넘긴 경우</p>	<p>이민국 통해 영주권 신청하면 거부되고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수속하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큼.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10 년동안 미국에 못 올 가능성이 큼.</p>

**주재원 (L1), 또는 H1B 비자나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계셨던 분들.**

		상황	어떻게 되나?
이미 영주권 수속이 시작된 경우	4A	합법적 체류 상태에서 영주권 수속이 시작된 분	영주권이 거부되고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수속하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함.
	4B	합법적 체류가 끝난 다음 영주권 수속이 시작된 분	영주권이 거부되고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수속하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10 년동안 미국에 못 올 가능성이 큼.
아직 영주권 수속이 시작 안된 경우	4C	합법적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이민국 통해 영주권 신청하면 거부되고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수속하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큼.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함.
	4D	합법적 체류기간 넘겼지만 불체되지 아직 6 개월 (180 일) 미만인 경우	이민국 통해 영주권 신청하면 거부되고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수속하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큼.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가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염려됨.

	4E	합법적 체류기간 넘겼고 불체된지 6 개월 (180 일) 넘긴 경우	이민국 통해 영주권 신청하면 거부되고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수속하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큼.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10 년동안 미국에 못 올 가능성이 큼.
--	----	---	--

(희망법률그룹)